

2023년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5.(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9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49건(안전번호 제2023-152211호~15425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52211호~152212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2213호~152243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2244호~15225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2252호~152267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2268호~152302호는 웹하드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9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1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5221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이며 제2023-15221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는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김준근 주임: ◆◆◆ 저작물이 있는 특정 게시물을 심의했다고 해서 ◆◆◆에 별도로 알려주지는 않음.
- C 위원: 그러면 권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A 위원: 권리자가 직접 신고해서 심의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3-152211호는 링크에 있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링크로 연결되는 □□□□□□에 접속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 △△△ 그리고 □□□□□□ 모두 게시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모두 신고건인가?
- 김준근 주임: 안전번호 제2023-152211호는 신고건이며, 제2023-152212호는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한 것임.
- D 위원: 해당 게시자는 약간 파워 블로그 성격이 있는 것 같음. 영상만 계속해서 올리는 블로그와 비슷함.

- B 위원: 링크를 바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주소만 알려주는 것도 시정 권고 대상 인가?
- A 위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를 가져다 게재하는 것도 그 링크에 대해서 방조 책임을 묻는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임.
- C 위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바뀌어서 그러함. 불법임을 알고도 링크를 걸면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걸로 판례가 변경되었음. 사안마다 심의위원회가 취한 일관된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돌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면 토론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사안에서 갑자기 부결하기는 어려움.
- D 위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막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도 있음.
- C 위원: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조정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해오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재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존중함.
- A 위원: D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가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52211호~15221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2211호~15221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213호~15224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이런 불법 스트리밍 기기는 정품 유통처럼 보지만, 사실 기기만 있으면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음.
- C 위원: 저 기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
- 이숙형 부장: 기기를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C 위원: 구입은 문제가 안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즉 남의 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순간부터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 필요함.

- C 위원: 예를 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지, 사는건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런데 이런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게시물도 계속 처리하고 있는 사안인가?
- 이숙형 부장: 방송사들이 이런 기기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를 바라고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52213호~15224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2213호~1522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244호~1522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종이책 판매는 문제가 안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전자책 등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PDF 판매를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PDF로 판매하는 책의 원본 가격은 얼마인가?
- 김준근 주임: 약 2만원 정도임.
- A 위원: PDF의 경우 빈도 그리고 책의 가격에 관해 심의위원님들 간에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하는가' 등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체로 적극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게시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52244호~15225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2244호~1522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252호~15226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거래하는 대상은 모두 영상인가?
- 김준근 주임: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음. 그리고 음악도 실제로는 몰래 녹음한 것들이 대부분임. 그리고 이런 저작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게시물 본문 내에 단순히 목록만 게시를 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 초기화를 해서 본문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 C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영상 저작물이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인가?
- 김준근 주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통 이렇게 댓글과 같은 정황 증거만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같은 안전은 개연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심의를

해온 부분으로 댓글 같은 것으로 실제로 이 영상들에 대한 판매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추정을 하고, 게시자들의 게시 반복성, 게시물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침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침해 정보를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심의위원 간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같은 뮤지컬 교환·판매 게시물은 ☆☆☆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계정정지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는가?
- 이숙형 부장: 아시겠지만 ☆☆☆와 같은 포털에 대해서는 계정정지 하고 있지 않음. 뮤지컬협회에서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임.
- D 위원: ☆☆☆ 블로그에 특히 뮤지컬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
- A 위원: 콘서트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뮤지컬이 많이 보임.
- D 위원: 특히 저희 분과에만 뮤지컬이 매번 올라오고 있음.
- 김준근 주임: 네 개 분과에 골고루 올라오고 있음.
- D 위원: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음.
- A 위원: 이 정도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임.
- D 위원: 처음에 제가 2분과에 왔을때는 3~4개 정도였는데 이젠 20개가 넘어가고 있음. 그리고 게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량이 너무 많으며 거의

업자 수준임.

- A 위원: 사실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불법 유통되는 뮤지컬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은 안되지만, 거래 행위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침해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보통 가결로 처리를 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비밀 댓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는 있는가?
- 김준근 주임: 볼 수 없는 상황임.
- C 위원: 실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를 한다는 것에 약간 부담은 있음.
- A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의견들도 있었음.
- D 위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며 댓글도 비밀 댓글이라 확인 할 수가 없음.
- 이숙형 부장: 간혹 공개 댓글로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밀 댓글임.
- A 위원: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자가 이의 제기 같은 걸 통해 다룰수도 있지만, 선례를 보면 그런 경우는 없었음.

- C 위원: 언제부터 이런 뮤지컬 교환·판매 게시물이 본격화된 것인가?
- 이숙형 부장: 뮤지컬 업계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뮤지컬 밀착·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C 위원: 뮤지컬 관련해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
- 김준근 주임: 기존에 논의한 적이 있음. 그 당시 본문에 저작물 목록을 제공해야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목록 확인이 불가능하면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C 위원: 안전으로 올라올 때 보호원의 기준 같은걸 알려주면 불필요한 논의가 생략 될 수 있을 것임.
- 김준근 주임: 다음 심의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B 위원: 특정 분야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졌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뮤지컬에 대해서 조명을 해서 그런 것인지, 뮤지컬 분야만 이렇게 침해사례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면 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숙형 부장: 보호원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는데 장르별로 하는 모니터링 분야가 다르며 최신 유행 저작물 혹은 권리자가 요청하는 저작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지컬이나 출판 관련된 것은 권

리자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으며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있는 것 같음. 그 때마다 필요하면 전체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새로운 안건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음.

- C 위원: 사무처에서 분과별로 조율을 해야 할 것임. 분과마다 의결결과가 다르면 안됨.
- 이숙형 부장: 사안별로 다른 경우는 있음. 기준을 정하되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는 있음.
- D 위원: 뮤지컬의 경우 교환·판매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금액도 제시하고 목록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모두 판매 목적인 것임.
- B 위원: 판매자들이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콘텐츠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원작을 감상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요즘 말로 니즈가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 D 위원: 말씀하신 두가지가 다 해당함. 코로나 때 집에서 뭔가를 봐야되는 상황에서 뮤지컬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깐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불법게시물들이 상당히 늘어났음. 원래는 일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전문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뮤지컬 제작사 협회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원래 고소,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였음. 그전에는 소비자들한테 강하게 고발 조치하는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상황이 갈수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음.

- 이숙형 부장: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인가?
- D 위원: 처벌을 잘 안해주고 벌금형도 50만원 정도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예기를 하는데, 아마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영화 등과 공연은 달라서 인식 개선도 필요도 있음.
- C 위원: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단체가 하는가?
- D 위원: 뮤지컬 제작사 협회, 제작사들이 같이 하고 있음.
- 이숙형 부장: 소장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상 뮤지컬을 본 사람들인가?
- D 위원: 대부분 본 사람들과 매니아들인데, 너무 확산이 되고 있음. 심의위원 분들 중에는 너무 막으면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법을 열어 주는게 좋지 않냐는 분도 계신데, 상황이 너무 심각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52252호~15226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2252호~15226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268호~152302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52268호~15230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2268호~15230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303호~15425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일반영상, 만화/웹툰, 방송, 영화, 음악, 출판/어문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

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엘리멘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52350호(“65”)는 2023.06.14.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800인트에 판매중임.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3-153023호(“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는 2023.06.28.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560포인트에 판매중임.

(“국가수사본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3-153601호(“국가수사본부”)는 2023.03.03. 공개한 한국 예능으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보면 특정 영화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부러 키워드를 넣어서 그런것인가?
- 김준근 주임: 웹하드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또 모니터링 대상 최신 영화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 번호 제2023-152303호~15425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152303호~15425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

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3-152211호~152212호, 제2023-152213호~152243호, 제2023-152244호~152251호, 제2023-152252호~152267호, 제2023-152268호~152302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123709호~12515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기사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12.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